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소관 : 국제출원과]

개정 2008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7-16호	개정 2013년02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13-5호
개정 2008년05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6호	개정 2013년04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3-10호
개정 2008년07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14호	개정 2013년07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3-17호
개정 2008년09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8-18호	개정 2013년08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3-18호
개정 2009년01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8-23호	개정 2013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13-37호
개정 2009년02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09-1호	개정 2014년02월10일 특허청 고시 제2014-4호
개정 2009년04월01일 특허청 고시 제2009-3호	개정 2014년03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14-9호
개정 2009년07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09-13호	개정 2014년06월30일 특허청 고시 제2014-19호
개정 2009년08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09-20호	개정 2014년11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4-30호
정정 2009년10월20일 특허청 고시 제2009-28호	개정 2015년03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5-3호
개정 2009년11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09-37호	개정 2015년06월23일 특허청 고시 제2015-9호
개정 2009년12월04일 특허청 고시 제2009-40호	개정 2015년11월18일 특허청 고시 제2015-32호
개정 2010년01월26일 특허청 고시 제2010-2호	개정 2015년12월14일 특허청 고시 제2015-37호
개정 2010년0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0-3호	개정 2016년05월11일 특허청 고시 제2016-10호
개정 2010년04월05일 특허청 고시 제2010-7호	개정 2016년09월02일 특허청 고시 제2016-22호
개정 2010년06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0호	개정 2016년11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6-26호
개정 2010년07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0-12호	개정 2017년02월28일 특허청 고시 제2017-6호
개정 2010년07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0-13호	개정 2017년09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7-21호
개정 2010년09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6호	개정 2017년11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7-25호
개정 2010년11월29일 특허청 고시 제2010-17호	개정 2017년12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7-28호
개정 2011년03월31일 특허청 고시 제2011-5호	개정 2018년02월12일 특허청 고시 제2018-1호
개정 2011년07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11-14호	개정 2018년05월23일 특허청 고시 제2018-8호
개정 2011년10월06일 특허청 고시 제2011-20호	개정 2018년09월03일 특허청 고시 제2018-21호
개정 2011년12월06일 특허청 고시 제2011-25호	개정 2018년11월14일 특허청 고시 제2018-25호
개정 2012년03월08일 특허청 고시 제2012-2호	개정 2018년12월21일 특허청 고시 제2018-32호
개정 2012년04월09일 특허청 고시 제2012-4호	개정 2019년07월17일 특허청 고시 제2019-10호
개정 2012년05월07일 특허청 고시 제2012-5호	개정 2019년09월24일 특허청 고시 제2019-13호
개정 2012년06월18일 특허청 고시 제2012-7호	개정 2019년10월28일 특허청 고시 제2019-18호
개정 2012년08월22일 특허청 고시 제2012-31호	개정 2019년12월19일 특허청 고시 제2019-23호
개정 2012년09월17일 특허청 고시 제2012-32호	개정 2019년12월31일 특허청 고시 제2019-26호
개정 2012년10월15일 특허청 고시 제2012-33호	개정 2020년05월27일 특허청 고시 제2020-14호
개정 2012년12월13일 특허청 고시 제2012-38호	개정 2020년06월26일 특허청 고시 제2020-19호

1. 국제출원료 1,330스위스프랑
(출원서 30매 초과시 1매당 가산료) (15스위스프랑)

2. 조사료
 - 가. 오스트리아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2,334,000원
(다만, 모든 출원인이 자연인이고 오스트리아를 국제조사기관으로 하는 국가의 국민이면서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사료의 75%를 감면)
 - 나.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757,000원
 - 다.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783,000원
(일본 법령에 따라 조사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출원시 출원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조사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료 감면 신청 시, 조사료 감면 여부는 일본 법령에 따라 일본특허청에서 결정한다.)
 - 라. 싱가포르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1,955,000원

3. 취급료 255,000원

4. 감면료
 - 가. PCT규칙 96.1의 수수료표 item4(c)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출원시 300스위스프랑

5.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가산료는 각 분기 시작 첫째날의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고고시된 매매 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단, 분기 시작 첫째날이 외환시장 휴장일인 경우는 그 이후 처음 개장하는 KEB 하나은행(구.외환은행)에서 최고고시된 매매기준율에 의해 정해지는 원화로 한다.

6. 삭제

7.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 국가 :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고,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태국,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캄보디아, 라오스

8. 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제2008-6호, 2008. 3. 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다목 일본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8-14호, 2008. 5. 2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8-18호, 2008. 9. 1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8-23호, 2008. 11. 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1호, 2009. 1. 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13호, 2009. 7. 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9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20호, 2009. 8.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다만, 2호 나목 호주특허청 조사료는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7호, 2009. 11. 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09-40호, 2009. 12. 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2호, 2010. 1. 2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7호, 2010. 4. 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

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0호, 2010. 6. 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호 다목 일본 특허청 조사료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2호, 2010. 7. 1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3호, 2010. 7. 2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2호 다목 및 3호는 2010년 0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6호, 2010. 9. 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0-17호, 2010. 11. 2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1-5호, 2011. 3. 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

료는 제외로 한다.)

부칙 <제2011-14호, 2011. 7. 2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1-20호, 2011. 10. 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1-25호, 2011. 12. 6.>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2호, 2012. 3. 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4호, 2012. 4. 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5호, 2012. 5. 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7호, 2012. 6. 1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31호, 2012. 8. 2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32호, 2012. 9.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33호, 2012. 10. 1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2-38호, 2012. 12. 1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5호, 2013. 2. 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0호, 2013. 4. 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7호, 2013. 7. 15.>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18호, 2013. 8. 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3-27호, 2013. 12. 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4호, 2014. 2. 10.>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9호, 2014. 3.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19호, 2014. 6. 2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4-30호, 2014. 11. 2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에 한해 2015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호, 2015. 3. 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주특허청의 조사료에 한해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9호, 2015. 6. 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2호, 2015. 11. 1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5-37호, 2015. 12. 1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6-10호, 2016. 5. 1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6-22호, 2016. 9. 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6년 1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6-26호, 2016. 11. 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정기 환율조정에 의거 조사료 및 취급료에 한해 2017년 1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7-6호, 2017. 2. 2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3호 취급료는 제외한다.)

부칙 <제2017-21호, 2017. 9. 2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7-25호, 2017. 11. 2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7-28호, 2017. 12. 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

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1호, 2018. 2. 12.>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 조정에 의거 일본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18년 4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8호, 2018. 5. 2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21호, 2018. 9. 3.>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특허청장이 고시하여 정한 외국 특허청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8조(1)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국제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018-25호, 2018. 11. 14.>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8-32호, 2018. 12. 2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10호, 2019. 7. 17.>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13호, 2019. 9. 24.>

1.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18호, 2019. 10. 28.>

1.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23호, 2019. 12. 1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19-26호, 2019. 12. 3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0-14호, 2020. 5. 27.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 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7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부칙 <제2020-19호, 2020. 6. 26. >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사무국 환율 조정에 의거 호주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조사료에 한해 2020년 8월 1일부터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제출원한 것으로서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3호 취급료의 금액은 취급료의 납부일에 적용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 1서식]手数料軽減申請書 (調査手数料等)

【書類名】 手数料軽減申請書 (調査手数料等)

【あて先】 特許庁長官 殿

【国際出願の表示】

【国際出願日】

【書類記号】

【軽減を申請する者】

【氏名又は名称 (日本語)】

【氏名又は名称 (英語)】

【あて名 (日本語)】

【あて名 (英語)】

【手数料軽減に関する内容】

【代理人】

【弁理士】

【氏名又は名称 (日本語)】

【氏名又は名称 (英語)】

【あて名 (日本語)】

【あて名 (英語)】

[별지 제1호의 2서식] 手数料軽減申請書 (調査手数料等)

【書類名】 手数料軽減申請書 (調査手数料等)

【あて先】 特許庁長官 殿

【国際出願の表示】

【国際出願日】

【書類記号】

【軽減を申請する者】

【氏名又は名称 (日本語)】

【氏名又は名称 (英語)】

【あて名 (日本語)】

【あて名 (英語)】

【手数料軽減に関する内容】

【持分の割合】

【軽減を申請する者】

【氏名又は名称 (日本語)】

【氏名又は名称 (英語)】

【あて名 (日本語)】

【あて名 (英語)】

【手数料軽減に関する内容】

【持分の割合】

【代理人】

【弁理士】

【氏名又は名称 (日本語)】

【氏名又は名称 (英語)】

【あて名 (日本語)】

【あて名 (英語)】

【持分の割合に関する特記事項】